



청렴한 세상 만들기 공공기관 사규개선 워크숍



2010.8.26.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회의 개요

□ 목 적

-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적극 동참 유도
- 수요자 중심의 워크숍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업무이해도 제고
- 공통사규 우수사례 공유로 전반적 사규운영 수준 향상 유인

□ 개 요

- 일시 : 2010. 8. 26.(목) 10:00 ~ 16:30
- 장소 : 용인 한화리조트(경기도 용인시)
- 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102개
- 참석범위 : 각 기관 인사, 계약, 기관운영비, 감사분야 부패영향평가 담당자

□ 주요내용

-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공통사규 1·2차 분석자료)
- 공직유관단체 법인카드 사용 이행점검 결과 발표
-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
- 청렴한 세상 만들기 특강

□ 진행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00 ~ 10:30	30	참석자 등록	진행본부
10:30 ~ 10: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0:35 ~ 10:45	10	인사말씀	부위원장
10:45 ~ 11:00	15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김옥희 사무관
11:00 ~ 11:45	45	공통사규 평가결과 발표(Ⅰ)	최진경 주무관
11:45 ~ 12:45	60	점심식사	-
12:45 ~ 13:00	15	위원회 홍보영상 상영 -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사회자
13:00 ~ 13:15	15	법인카드 이행점검 결과 발표	나정엽 사무관
13:15 ~ 13:55	40	공통사규 평가결과 발표(Ⅱ)	최진경 주무관
13:55 ~ 14:10	15	우수사례 발표(LH공사)	박상수 차장
14:10 ~ 14:30	20	휴 식	-
14:30 ~ 16:00	90	특 강 ‘지식의 저주와 변화관리’	이호욱 교수
16:00 ~ 16:30	3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부패영향분석과장
16:30	-	폐 회	사회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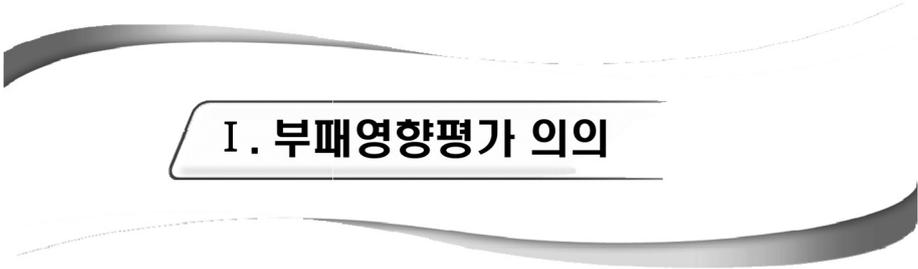
I. 부패영향평가 제도소개	1
II.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17
III. 법인카드 이행점검 결과	109
IV.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15
V. 지식의 저주와 변화관리	123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2010. 8. 26.

국 민 권 의 위 원 회



I. 부패영향평가 의의

가.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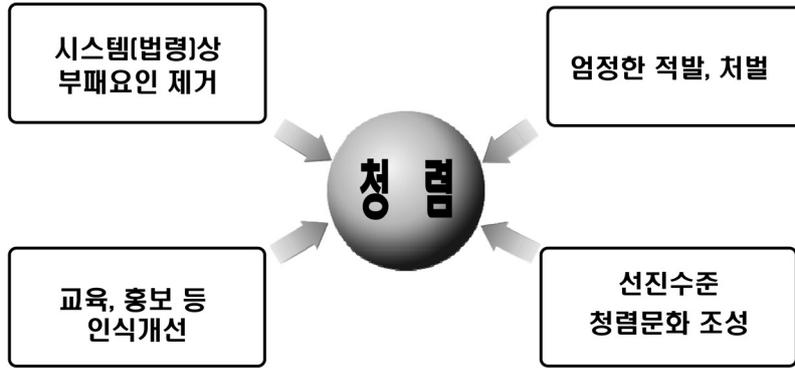
나. 부패발생 원인 : 부패인식도 조사결과(2008년)

(단위 : %)

항 목	일반 국민	공무원	기업인	여론 선도층	주한 외국인
관대한 처벌	24.1	12.9	18.0	21.0	14.5
부패관용 사회문화	23.0	19.6	25.0	28.4	34.5
정치 부패구조	17.4	35.6	13.4	11.0	12.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7.3	15.9	13.7	13.9	14.5
법/제도 · 불합리한 규제	17.0	15.3	29.3	24.7	18.5

- 일반국민 :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 공무원 :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 기업인 : 법/제도 · 불합리한 행정규제
- 여론선도층 · 외국인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다. 부패방지대책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 시스템(법령)상 부패요인 제거

라. 부패영향평가 개념 및 근거

개 념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법령 입안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거·정비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평가대상

- 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사규, 규정
- 제·개정 법령 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 현행법령도 평가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마. 부패영향평가 절차

- 소관부처 : 법령 제정, 개정안 입안
부패영향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권익위 평가의뢰
- 권익위 : 부패영향평가서 검토 => 개선의견, 폐지권고 등
- 법제처(법제심사), 규제개혁위(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의결

바.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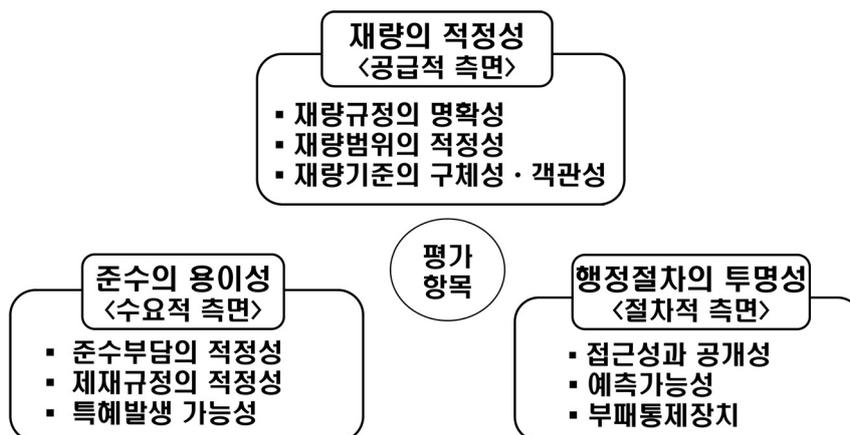
<연도별 제·개정 법령 평가현황>

(단위 : 개)

평가기간	평가 법령수	개선의견		원안동의 법령수
		법령수	개선의견수	
2006. 4~12월	609	119	359	490
2007년	1,168	259	737	909
2008년	1,368	269	496	1,099
2009년	1,394	229	508	1,165
2010. 6월	659	107	243	552
계	5,198	983	2,343	4,215

II . 부패영향평가 항목

가. 법령상 부패유발요인과 부패영향평가 항목



나. 부패영향평가 항목

● 공급요인 : 공무원 입장

- ▶ 업무처리 기준 및 방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은가?
- ▶ 법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곤란하지 아닌가?
- ▶ 담당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 수요요인 : 민원인·정책대상집단 입장

- ▶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이해관계자 등이 준수하기 어렵지 않은가?
- ▶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 특혜가 특정분야, 특정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절차요인

- ▶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비공개하는 것은 아닌가?
- ▶ 업무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되지 않은가?
- ▶ 부패를 통제하는 장치는 있는가?

<예시> 공급요인 : 불명확성

● 불명확성 → 불명확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량축소

- 불확정개념 : 필요한 경우, 상당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 경매, 경륜 등 수입금 집행 : 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버스 보조금 :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식품수입시 제출서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심의/의결위원회 위원 :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

● 예시 : 비위공직자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추상적인 규정 : 비위 고하, 고의 여부, 중과실 유무

<예시> 수요요인 : 처벌기준 비현실성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전화방) 단속 사례>

고발일시	결과	고발일시	결과
1차 (2001.9.4)	구약식	6차 (2007.3.27)	구약식(100만원)
2차 (2002.4.15)	구약식	7차 (2007.12.17)	구약식(150만원)
3차 (2003.12.31)	구약식	8차 (2008.6.18)	구약식(200만원)
4차 (2004.12.23)	구약식	9차 (2008. 11.7)	공소권 없음
5차 (2006.5.4)	구약식(50만원)	10차 (2009.6.5)	구약식(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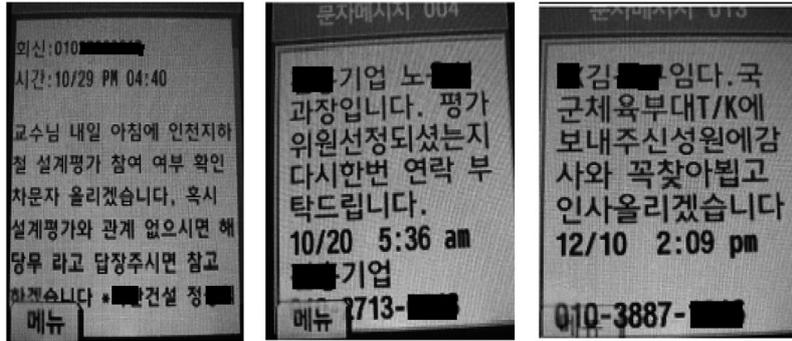
☞ 불법업소(전화방)에 대해 10년간 10차례 고발 → 영업 지속

<예시> 절차요인 : 정보공개 확대(2010년 평가사례)

-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업무추진비집행지침)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보조금법)
-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상황 공개(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마사회 수익금 지원 및 집행상황 공개(마사회법)
- 담배소매인 지정, 홈페이지 등 공개(담배사업법시행규칙)

<예시> 절차요인 : 부패통제장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턴키공사 관련 심사위원 로비사례>



☞ 공사계약 심사위원에 대한 전사적 차원의 전방위 로비 관행

<예시> 절차요인 : 부패통제장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제고**
 - 심의/의결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예: 과반수) 확대
 - 유착관계 형성 차단을 위한 위원의 임기 및 장기연임 제한
 -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자격기준 구체화
- **위원 활동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장치 마련**
 - 심의위원이 당해기관 발주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수주 제한
-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 강화**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회의록의 원칙적인 공개

Ⅲ .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가. 부패영향평가 의의

의 의

-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규등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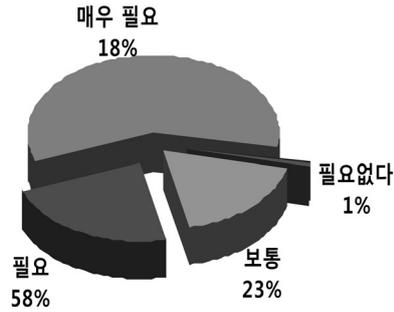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조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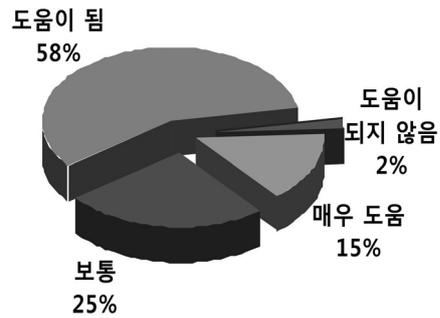
- 사규·정관, 지침, 요령 등 공직유관단체가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규정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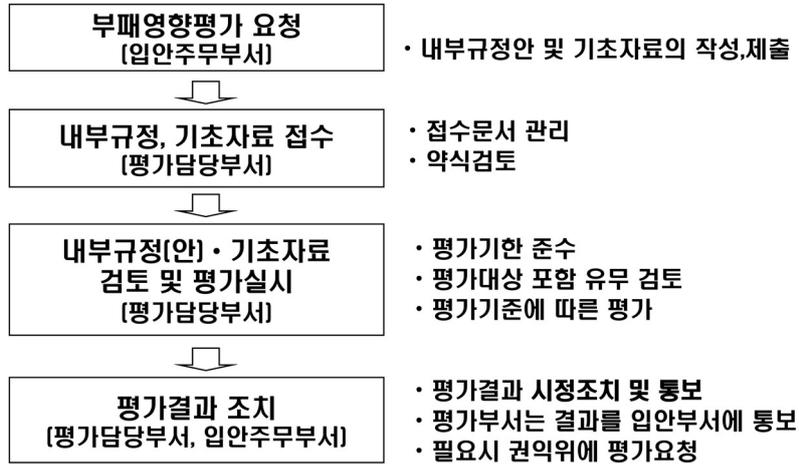
〈기관의 투명성 제고 기여도〉



나.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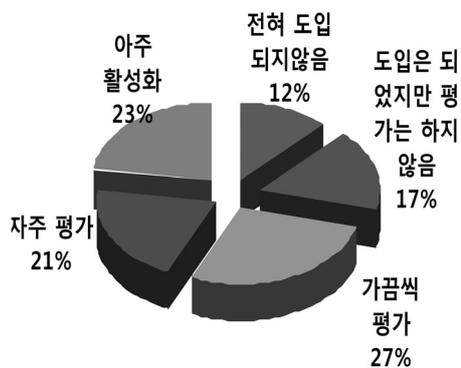
- 자율평가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요청에 의한 평가
 - 사규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 사규평가 컨설팅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권익위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다. 자율평가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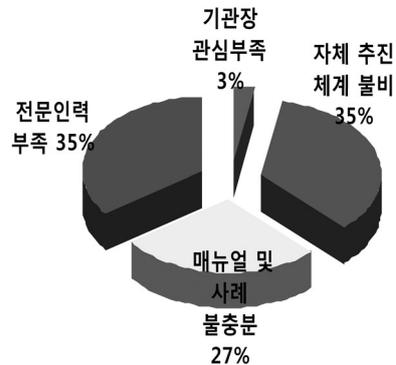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부패영향평가 추진 정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라. 법령과 사규 부패영향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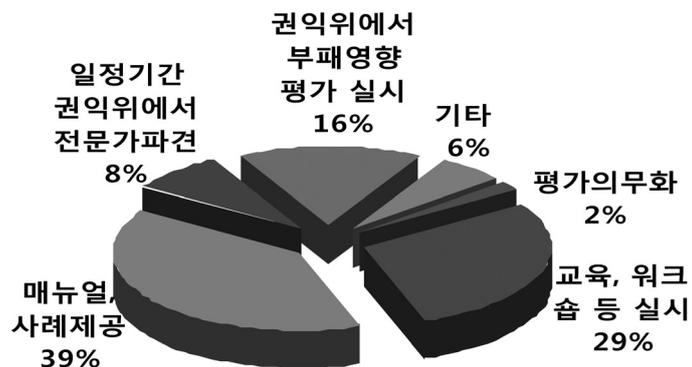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 추진시스템 비교〉

	법령 부패영향평가	사규 부패영향평가
소관기관	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
평가방법	입법시 평가 의무화	자율평가 원칙
평가주체	국민권익위원회	· 각 기관 사규담당부서 · 필요시 권익위 권고
평가항목	9개 항목	9개 항목

☞ 평가항목은 동일하나, 평가방법 · 주체에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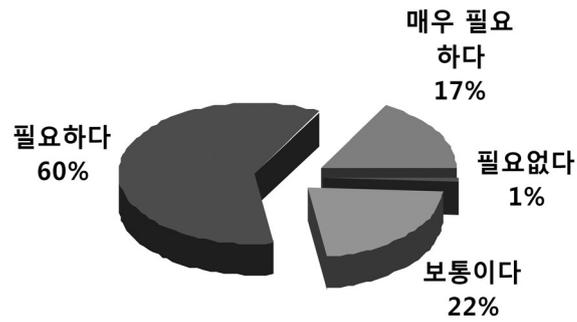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를 검토하여 개선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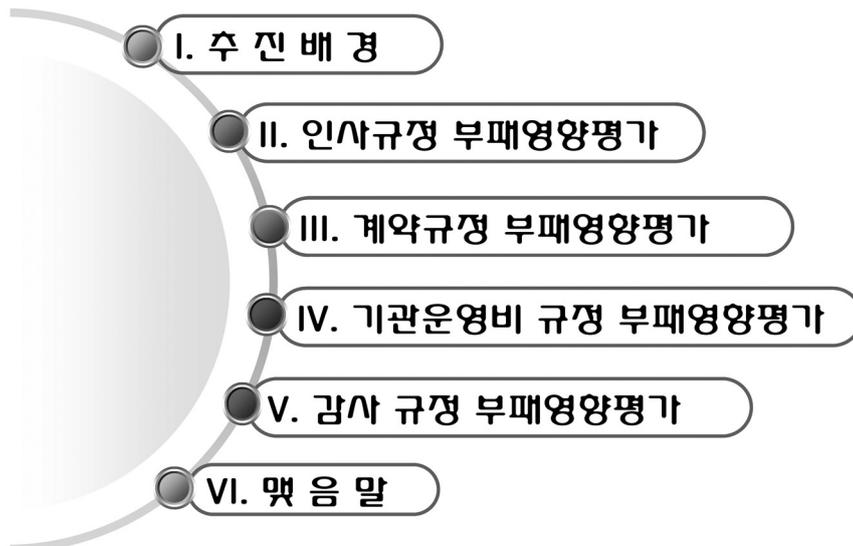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1)

- 인사, 계약 규정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부패영향분석과)



I. 추진배경

- ❖ ISO26000 등 사회적 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자발성, 법 이상의 준수 노력, 지속적인 프로세스
- ❖ 공직유관단체의 지속적인 윤리·투명경영 노력
 - 제도화 위해 사규 정비 필요
 -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79개) 지원
- ❖ 인사·계약·기관운영비·감사 등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 공유

II. 인사규정 부패영향평가

▶ 인사업무 관련 부패 사례

▪ '08.11월(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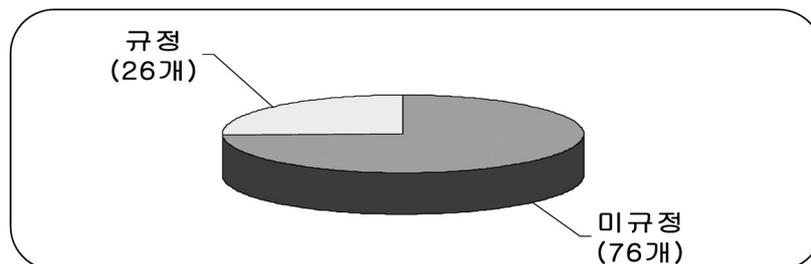
- '07년 12월 신규직원 채용 관련 점수 조작 혐의
: ○○기관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공사 간부 승진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 전 국회의원 장모씨 기소
- 인사상 혜택명목으로 41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 ○○공사 전 사장 구속 기소
- 직원승진 대가 및 채용 대가 뇌물수수 혐의
: ○○공단 전 이사장 구속 기소

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 문제점

- 특별채용 등 내부직원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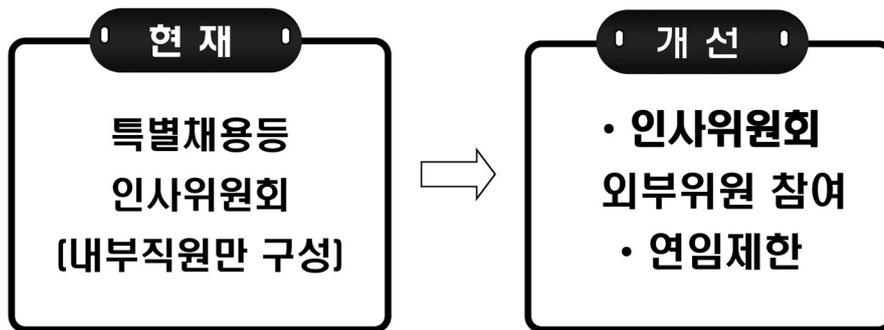


- ▶ 규정 기관 : 부산교통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 개선방안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유착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우수사례】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상임이사,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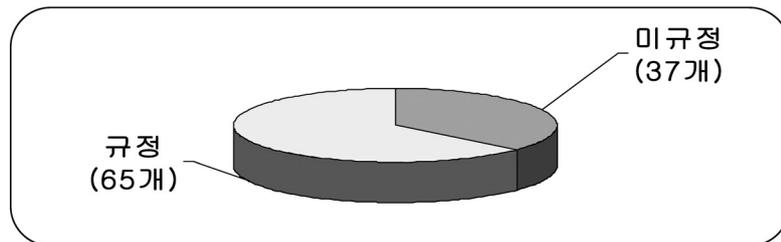
⑤ 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문제점

- 인사대상자 관련 이해관계자 인사과정 참여
→ 인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저하

〈인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업무 배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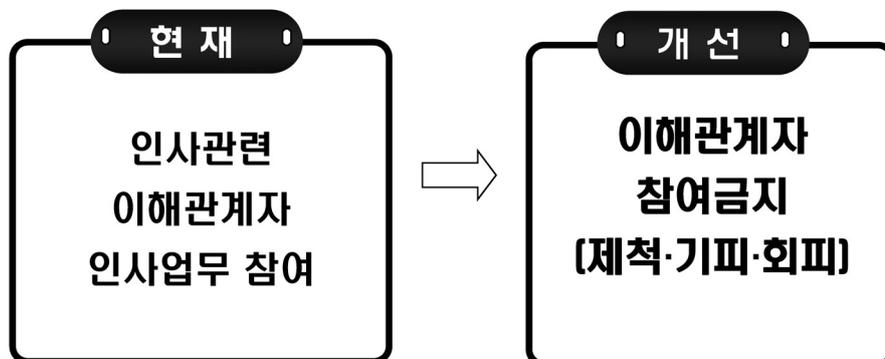


- ▶ 규정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개선방안

- 특별채용 등 인사업무 관련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우수사례】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예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등)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예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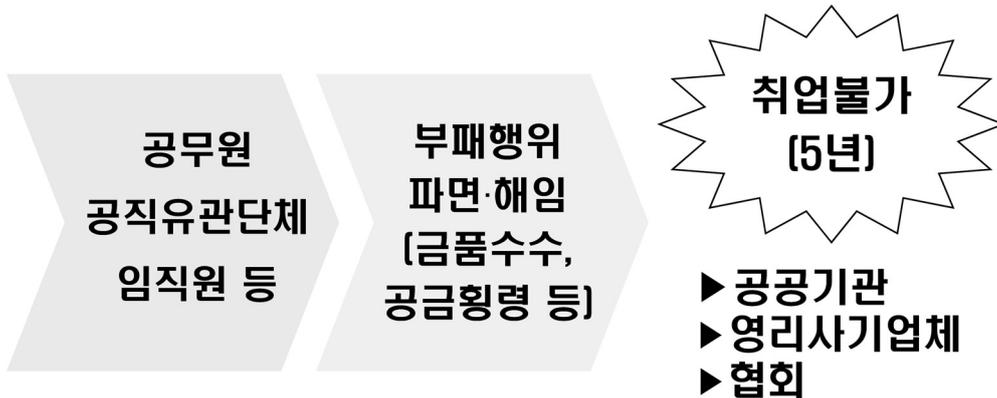
-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회피 :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 의원면직 관련 부패사례('10.3월, 감사원)
 - ○○공단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직원에게 의원면직 승인
 - 사기업체 재취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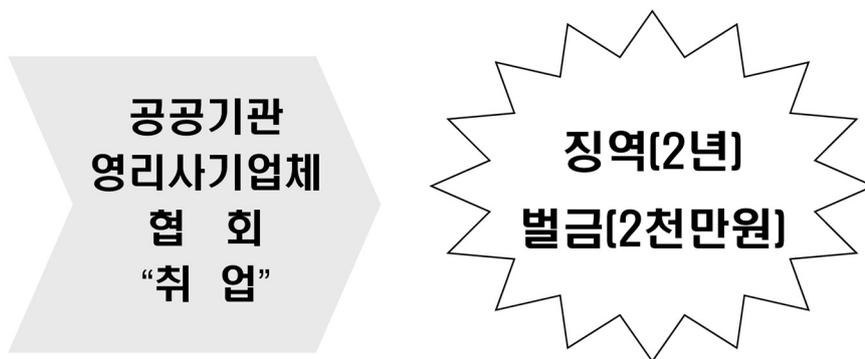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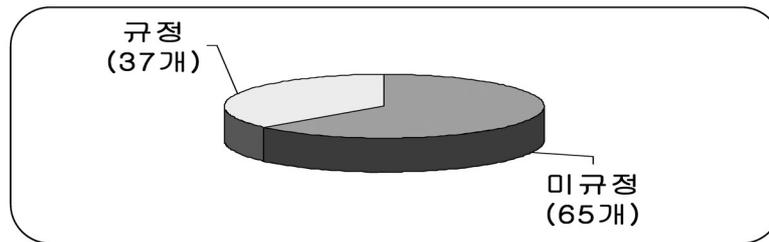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문제점

-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미비

〈비위조사 임직원 의원면직 제한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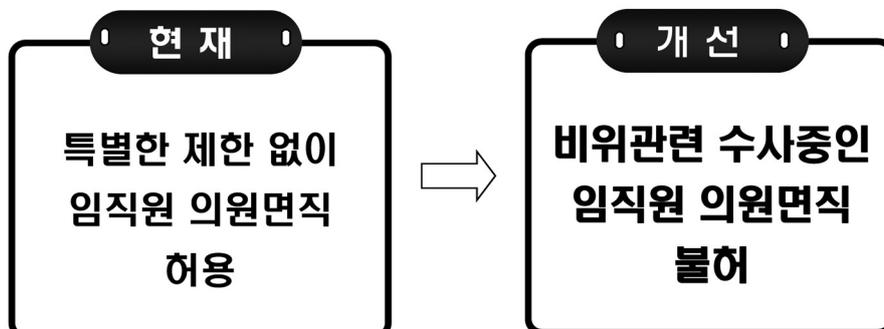


- ▶ 규정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개선방안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 : “의원면직 불허”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우수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

제51조(의원면직)

- ②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참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감사원, '05.2월]

- 감사원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처리 불가
- 의원면직 신청을 받은 임용기관은 감사원과 수사 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징계 관련 부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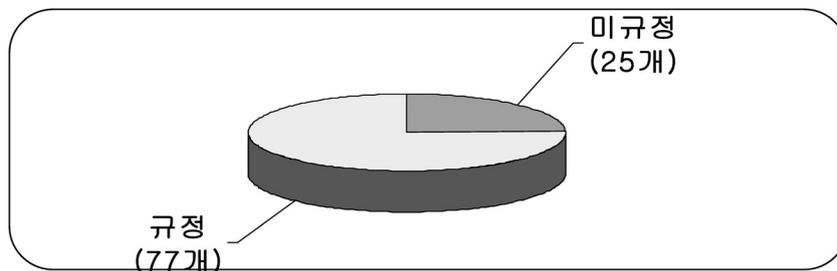
- ○○기관('10.3월, 감사원)
 - 고객이 분실한 300만원 상당의 '경품권' 을 주워 환급금을 수령(형법상 횡령죄)한 직원을 감사에게 미보고
 - ○○공사('10.3월, 감사원)
 -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봉급 4분의 1 감액' 으로 의결된 직원을 '견책' 으로 감경
- ⇒ **속방망이 처벌** → **국민 불신 초래**

4.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문제점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약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운영현황〉



- ▶ **규정 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개선방안

-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우수사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0만원 미만	1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책 ~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봉 ~ 정직	해임	파면	

4.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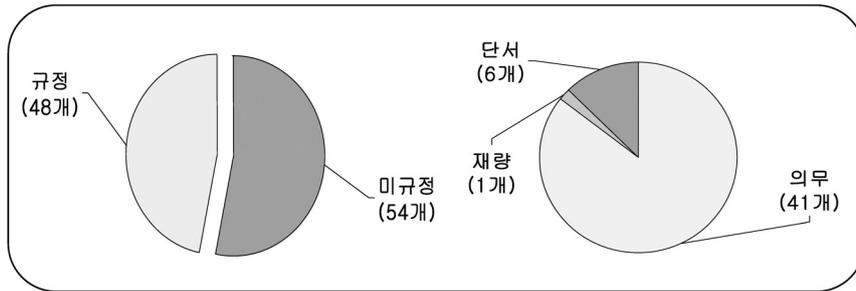
비위 유형	금액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 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5. 부패행위자 징계 감경 제한

❖ 문제점

- 부패행위자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미비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외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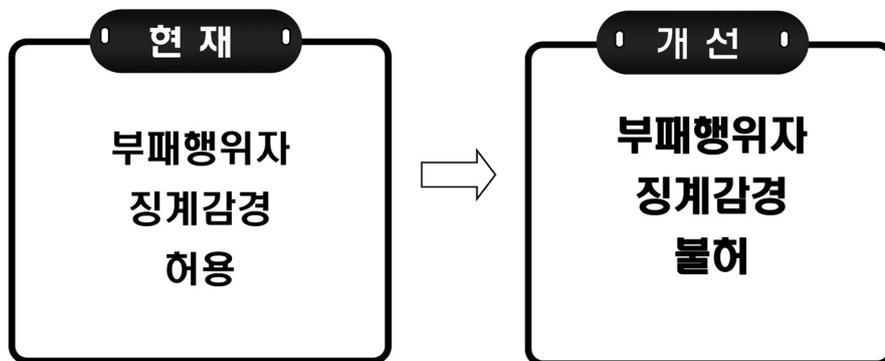


- ▶ 규정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5. 부패행위자 징계 감경 제한

◆ 개선방안

-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5. 부패행위자 징계 감경 제한

【우수사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58조의3(징계양정의 기준)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6.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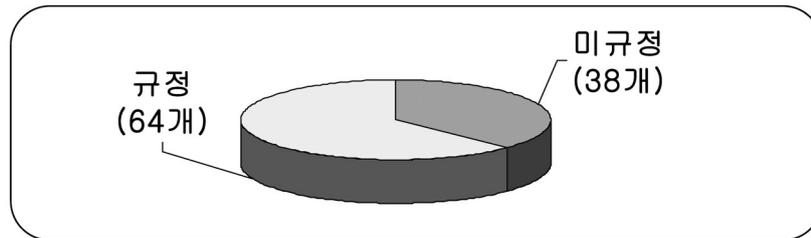
- 행정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3천만원 이상 고액횡령자 113건 중 35.4%(40건)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처리
- ○○기관은 2억 7,100만원 횡령하여 주식투자한 직원('08년) → 징계 면직처리○/고발X

6.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 문제점

- 부패행위자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처리

〈공금횡령범죄 형사 고발기준 규정 현황〉



- ▶ 규정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

6.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 공금횡령범죄 형사고발을 위한 자체 세부기준 마련

【우수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금횡령범죄 고발지침」

제5조(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III. 계약규정 부패영향평가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 문제점

-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 지속적 특혜시비 발생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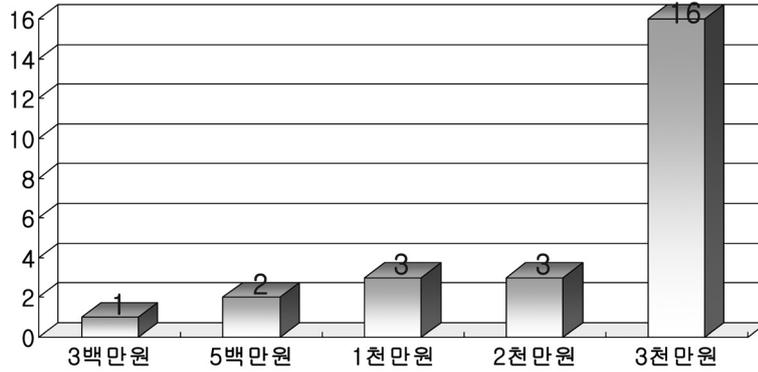
- 물품구매·용역 : 5천만원 이하
- 건설공사 : 2억 이하
- 1인 견적입찰 : 2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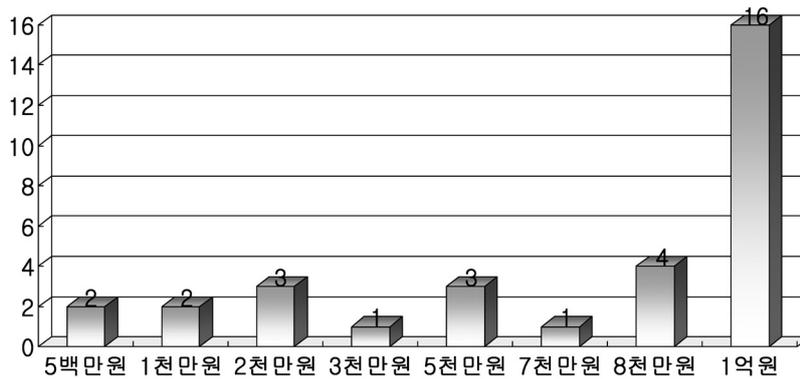
〈수의계약 금액 규정 현황(“물품구매·용역”) : 25개 기관〉



▶ 규정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한국철도공사 등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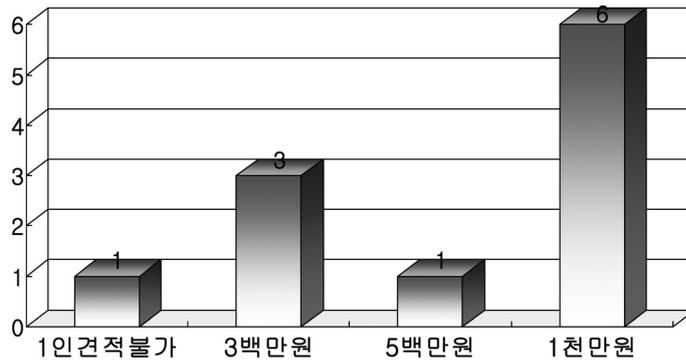
〈수의계약 금액 규정 현황(“공사”) : 32개 기관〉



▶ 규정 기관 : 한전(5백), 건강보험심사평가원(2천) 등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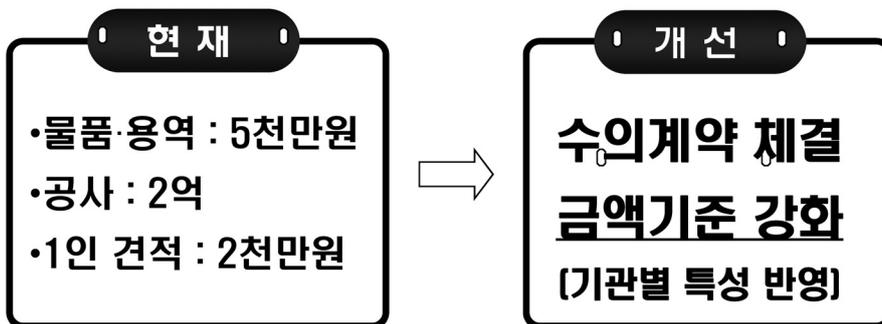
〈1인 견적입찰 가능금액 규정 현황 : 11개 기관〉



▶ 규정 기관 : 한국감정원(3백), 한국문화예술위원회(5백)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 개선방안 :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금액 기준 강화



◆ 대부분의 기관 : 국가계약법 준용
 일부 기관 : 법령보다 강화된 금액 기준 적용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우수사례】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수의계약집행)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호 각호에 의한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공사(간이공사 포함)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2. 용역, 구매 :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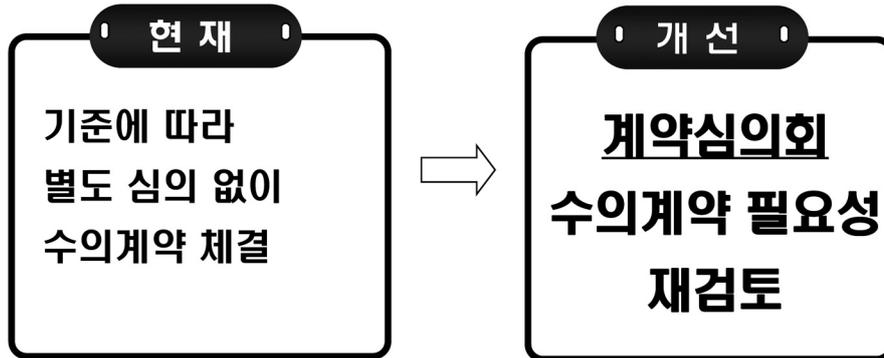
【우수사례】 한국감정원 「회계규정」

제141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월이내에 동일품목을 동일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2.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개선방안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2.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우수사례】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

제11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계약정보 공개

❖ 문제점

-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 빈발
-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하도급 현황 등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미공개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계약정보 공개

◆ 개선방안

-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우수사례】 경기도

- '09년 10월부터 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계약정보 공개

【우수사례】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

제23조(공사계약관리) ①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차량·시설·전기공사의 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경우 계약 담당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계약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관련공사의 사업부서 담당자는 이외에도 공정을(매월말 기준), 하도급사항, 현장배치기술자, 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공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 현재 청렴계약제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형태 등으로 운영
- ❖ 우리 위원회는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규정 법령화 등을 권고('09.12월)
 - 1)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반영 추진 중
 - 2)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법 반영 추진중
 - 3) 교과부 : 학교단위 청렴계약제 도입 추진중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시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필요
 - 특히 제재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재기간 경감을 불허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
 - 현재 한국전력만 제재기간 경감 불허를 규정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 개선방안 1 :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 모든 계약 체결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 위반업체 :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무화
- ◆ 개선방안 2
 - 청렴계약 위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의 경감 불허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경감 불허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시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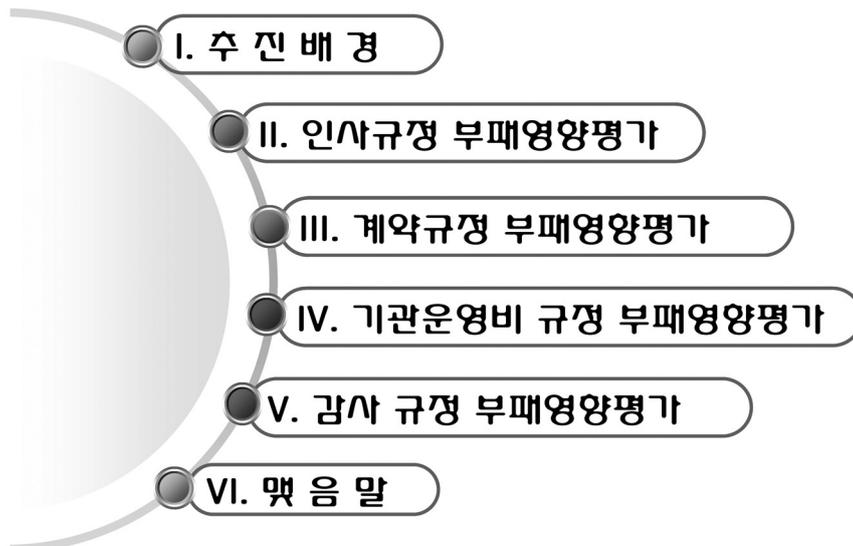
제4조의2(청렴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2)

- 기관운영비, 감사 규정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부패영향분석과)



IV. 기관운영비 규정 부패영향평가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문제점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미명시 다수

〈클린카드 제도 운영 현황 - 업종제한〉

구분	업 종 제 한		
	기재부 지침 반영	노래방 제외	업종 미명시
기관수	84개	2개	16개

- ▶ 규정 기관 : 국제방송교류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개선방안

- 노래방, 실·내외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포함)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모두 반영

※ '07.10월 국가청렴위원회는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을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권고
- '10년 공기업 예산집행지침(기재부)에도 반영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우수사례】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재단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
로 운용하며, 재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에 의하여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우수사례】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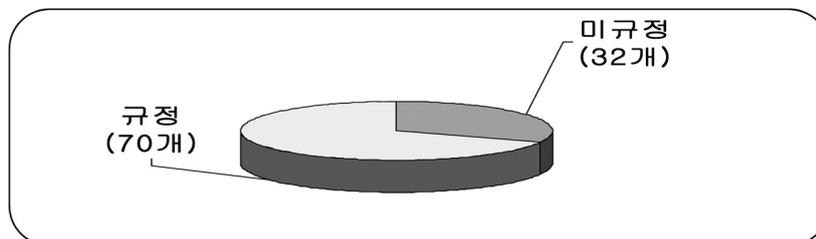
1.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문제점

- 법인카드 결제시 실명서명 의무화 규정 미비

〈클린카드 제도 운영 현황 - 실명서명〉



- ▶ 규정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개선방안

- 법인카드 전표에 소속 및 실명 기재 의무화

【우수사례】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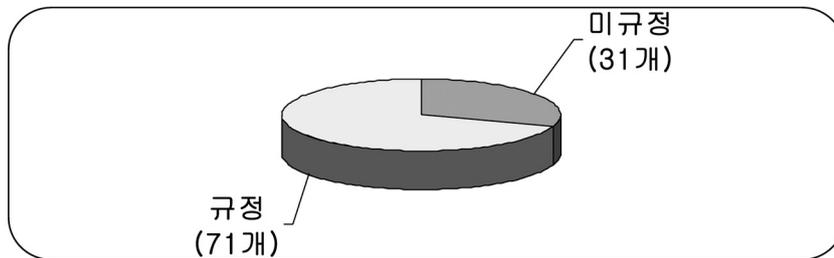
- ⑤ **법인카드 전표에 서명할 때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문제점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자에 대한 제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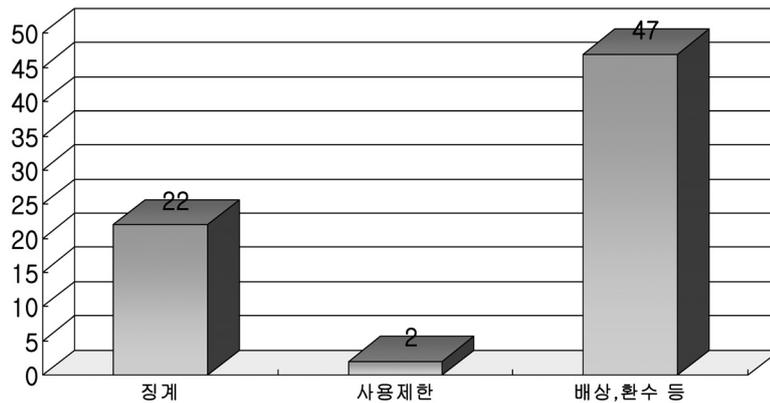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



- ▶ 규정 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71개 기관의 제재조치 운영 세부현황〉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개선방안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자(사용제한업소 사용 등) 징계요구 등 제재조치 강화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적용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우수사례】 근로복지공단 「법인신용카드 관리지침」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문제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빈발
-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역에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라고만 명시
-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객관적 통제 장치 미흡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예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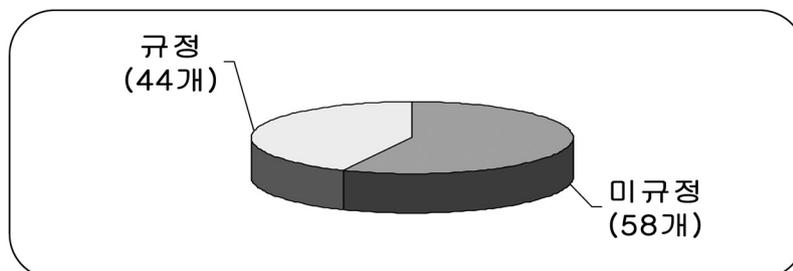
1. 집행목적(사업추진, 업무협의 등)
2. 집행자명, 집행(예정)일, 집행장소
3. 집행사유(구체적인 회의·협의 내용)
4. 집행대상 : 집행대상의 회사(기관)명, 부서, 성명
5. 집행내역 : 품목(석식·기념품 등), 참석인원, 총 지출액, 1인당 지출액 등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문제점

- 심야, 휴일 등 업무관련성이 적은 경우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미흡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현황〉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4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세부규정 현황〉

구 분			기관수	기관명
휴일	심야	자택 근처	합계(44개)	
제한	제한	제한	39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제한	-	-	3개	00공사 등
제한	제한	-	1개	00기관
-	제한	-	1개	00기관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개선방안

- 심야 및 휴일사용, 자택근처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추진비 원칙적 사용 금지
-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출장 명령서 등) 제출 의무화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 (4) (생략)

바.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소명 하여야 한다.

4. 상품권 및 화환 관리 강화

❖ 문제점

- 상품권 및 화환 구매에 대한 관리 미흡

〈상품권 및 화환 구매·배부 관리 현황(48개 기관)〉

구 분	기 관 명
상품권 및 화환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7개)
상 품 권	KOTRA, 한국전기안전공사 등(25개)
화 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16개)

4. 상품권 및 화환 관리 강화

◆ 개선방안

- 상품권 및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구체적인 구입내역(일시, 수량, 구입처 등)
 - 배부내역(배부수량, 수령인명) 기록·관리
 - ※ 한국감정원은 상품권 구입 금지

4. 상품권 및 화환 관리 강화

【예시】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1. 법인카드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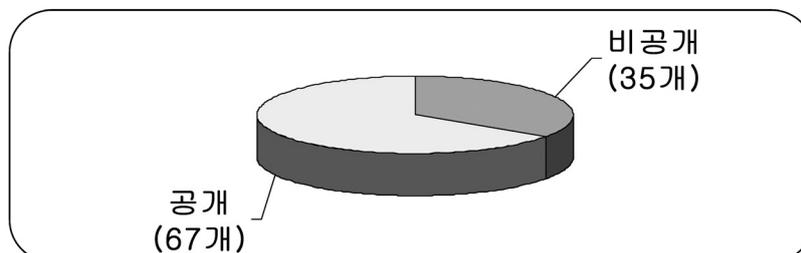
사. 회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시 관리대장(상품권 구입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별도로 정한다.

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문제점

- 업무추진비 사용 홈페이지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미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



▶ 규정 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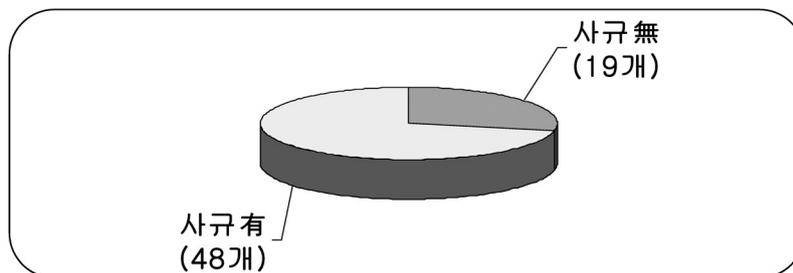
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상 및 주기(67개)〉

대 상	주 기	기관수	기 관 명
기관장 임 원	월 별	2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기별	4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기관장	월 별	1개	한국디자인진흥원
	분기별	3개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반기별	1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1회	5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규정 현황(67개)〉



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월별로 홈페이지 공개
- 공개 규정을 사규에 마련
-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 통합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를 통해 공개
- ※ 기관장 이외에 임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확대추세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우수사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11. 일반지침

2. 위원장, 사무국장, 부서장 기관업무추진비

- 직원 간담회, 유관기관, 대민 등 대내, 외적인 업무추진 경비
- 개인별 각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클린카드) 집행 원칙
- 월별 사용 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공개함.

<외국사례>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1)

The screenshot shows the Government of Canada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Français', 'Home', 'Contact Us', 'Help', 'Search', and 'Site Map'. The 'Proactive Disclosure'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Below it, the 'Government-Wide Reporting' section is visible, featuring a list of categories such a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and 'Auditor General of Canada, Office of the'. The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category is also circled in red.

<외국사례>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2)

The screenshot shows the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Français', 'Home', 'Contact Us', 'Help', 'Search', and 'canada.gc.ca'. The 'Proactive Disclosure'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Below it, the 'Government-Wide Reporting' section is visible, featuring a list of categories such as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and 'Auditor General of Canada, Office of the'. The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category is also circled in red.

<외국사례>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3)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www.agr.gc.ca

Franglais Home Contact Us Help Search canada.gc.ca

Home > About Us > Proactive Disclosure

Travel and Hospitality Expense Reports

Periods

- Period from 2010-03-02 to 2010-06-01
- Period from 2009/12/02 to 2010/03/01
- Period from 2009/09/02 to 2009/12/01
- Period from 2009/06/02 to 2009/09/01
- Period from 2009/03/02 to 2009/06/01
- Period from 2008/12/02 to 2009/03/01
- Period from 2008/09/02 to 2008/12/01
- Period from 2008/06/02 to 2008/09/01
- Period from 2008/03/02 to 2008/06/01
- Period from 2007/12/02 to 2008/03/01
- Period from 2007/09/02 to 2007/12/01
- Period from 2007/06/02 to 2007/09/01
- Period from 2007/03/02 to 2007/06/01
- Period from 2006/12/02 to 2007/03/01
- Period from 2006/09/02 to 2006/12/01
- Period from 2006/06/02 to 2006/09/01
- Period from 2006/03/02 to 2006/06/01
- Period from 2005/12/02 to 2006/03/01
- Period from 2005/09/02 to 2005/12/01
- Period from 2005/06/02 to 2005/09/01
- Period from 2005/03/02 to 2005/06/01
- Period from 2004/12/02 to 2005/03/01
- Period from 2004/09/02 to 2004/12/01
- Period from 2004/06/02 to 2004/09/01
- Period from 2004/03/02 to 2004/06/01

<외국사례>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4)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www.agr.gc.ca

Franglais Home Contact Us Help Search canada.gc.ca

Home > About Us > Proactive Disclosure

AAFC Travel and Hospitality Expense Reports

Period: 2010-03-02 to 2010-06-01

- 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 Gerry Ritz, Minister
-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and Minister of State (Agriculture)
 - Jean-Pierre Blackburn,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and Minister of State (Agriculture)
- Office of the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and Minister of State (Agriculture)
 - Sebastian Benedict, Policy Advisor
 - Celine Falardau, Senior Policy Advisor
 - Sylvain Frenette, Policy Director
- Parliamentary Secretary
 - David Anderson, Parliamentary Secretary
 - Pierre Lemieux, Parliamentary Secretary
 - Lianne Rood, Assistant to the Parliamentary Secretary
- Office of the Minister
 - Aaron Gardner, Chief of Staff
 - Karla House, Policy Advisor
 - James Scott, Senior Policy Advisor
 - Todd MacKay, Director, Communications
 - Steven Barrett, Director, Issues Management
 - Meagan Murdoch, Press Secretary
 - Dustin Pike, Policy Advisor
 - Mindy Conlin, Director of Policy
 - Matthew McBain, Policy Advisor
 - Devin Dreesen, Senior Policy Advisor
 - William Kuchapski, Special Assistant
 - Danielle Maier, Regional Communications Advisor

<외국사례>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5)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 Agriculture et Agroalimentaire Canada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www.agr.gc.ca

[Français](#) | [Home](#) | [Contact Us](#) | [Help](#) | [Search](#) | [canada.gc.ca](#)

[Home](#) > [About Us](#) > [Proactive Disclosure](#)

Producers

Agri-Industries

International Business

Science and Innovation

Land Managers

Proactive Disclosure

Disclosure of Contracts

Disclosure of Grant and Contribution Awards Over \$25,000

Disclosure of Position Reclassification

Disclosure of Travel and Hospitality Expenses

Disclosure of Wrongdoing in the Workplace

Browse by Type

AAFC Travel and Hospitality Expense Reports

Pierre Corriveau, Assistant Deputy Minister, Corporate Management Branch

[Return to expense reports for senior officials at AAFC](#)

Travel Expenses for 2010-03-02 to 2010-06-01

Date(s)	Purpose	Total Cost
2010-03-28 to 2010-03-29	Attended joint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Meeting.	\$851.79
Total Amount:		\$851.79

Hospitality Expenses for 2010-03-02 to 2010-06-01

Date(s)	Event Description	Cost
2010-03-02 to 2010-06-01	Nil	\$0.00
Total Amount:		\$0.00

<외국사례>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6)

AAFC Travel and Hospitality Expense Reports

Pierre Corriveau, Assistant Deputy Minister, Corporate Management Branch - Detailed Report

Travel Expense

For:	Pierre Corriveau, Assistant Deputy Minister, Corporate Management Branch
Purpose:	Meeting on Economic action plan accelerated infrastructure for federal laboratories and staff meeting.
Date (s):	2009-12-02 to 2009-12-03
Destination(s):	Lennoxville, QC
Air Fare:	\$0.00
Other Transportation:	\$0.00
Accommodations:	\$130.93
Meals and Incidentals:	\$139.20
Other:	\$0.00
Total Amount:	\$270.13

☞ **성명, 직책, 목적, 날짜, 식사비 등 공개**

6. 업무추진비 일상 감사 강화

❖ 문제점

-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미흡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 금액 현황〉

대 상	주 기	기관수	기 관 명
규정 (38개)	20만원	2개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0만원	1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0만원	9개	한국감정원, KOTRA 등
	1백만원	24개	00기관 등
	2백만원	2개	00기관 등
미규정 (64개)	-	-	

6. 업무추진비 일상 감사 강화

◆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강화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회부하여 실시하는 일상감사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고 대상금액 기준을 강화

6. 업무추진비 일상 감사 강화

【우수사례】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감사규칙」

제24조(회부시기) ①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서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 부서에 관련문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

1. ~ 4. (생략)

5. 매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지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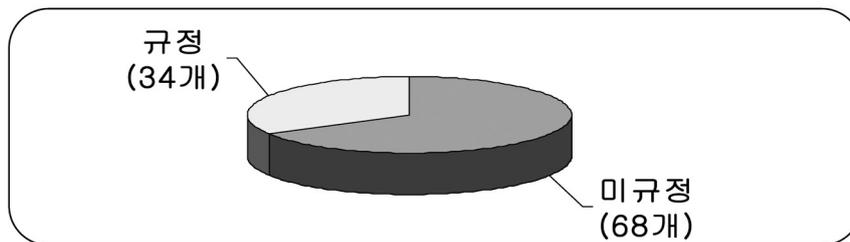
V. 감사 규정 부패영향평가

1. 감사담당자 이해관계업무 감사 배제

❖ 문제점

- 학연, 지역연고,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 담당자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감사담당자 이해관계업무 배제 규정 현황>



- ▶ 규정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 감사담당자 이해관계업무 감사 배제

◆ 개선방안

- 감사수행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

【배제사유 - 예시】

- 감사담당자가 감사수행일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감사담당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감사담당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가 감사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1. 감사담당자 이해관계업무 감사 배제

【우수사례】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6조(독립성)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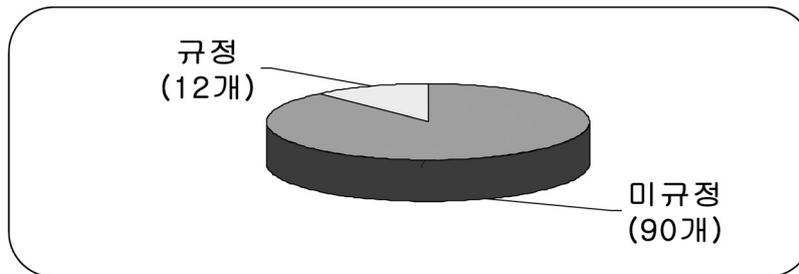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문제점

- 자체감사가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 청렴도 측정결과 공직자는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7.95점)과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의 적절성(7.76점)을 종합청렴도(8.5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09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감사업무에 외부인사 활용 규정 현황〉



▶ 규정 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개선방안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명예감사관제, 감사참관인제 등을 통해 감사담당자가 아닌 학계·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사과정을 참관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명예감사관제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입
 -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등 4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으로 제도화(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
- 감사참관인제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제10조) 근거
 -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남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운영중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명예감사관제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입
 -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등 4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으로 제도화(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
- 감사참관인제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제10조) 근거
 -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남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운영중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우수사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31조(외부 전문가 활용) 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3. 교차감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 개선방안

- 교차감사제도 운영근거 마련
: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 간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연고·온정주의가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3. 교차감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 국세청은 교차 세무감사를 통해 6개 세무서에서 7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9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으며, 교차세무 감사시 평균 추징세액은 131억원으로 자체감사 86억원에 비해 52% 증가('10.4월 국세청)

【우수사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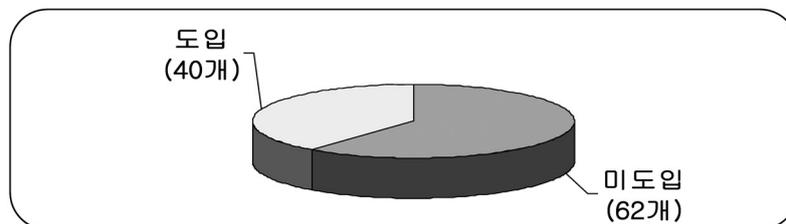
제3조(감사의 구분)

- ③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 국세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청렴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청렴옴부즈만 :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

〈청렴옴부즈만 제도도입 현황〉



▶ 규정 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 청렴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개선방안

-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자격요건 구체화
: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자격증, 실무 경력 등 기관운영의 감시 및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청렴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구성)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청렴옴부즈만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청렴옴부즈만 제도운영 현황(부패통제장치)〉

구 분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 제한	제척 기피 등	기관수	기 관 명
도입 (40개)	○	○	○	26개	한국철도시설공단
	○	○	X	5개	○○기관 등
	○	X	○	5개	○○기관 등
	○	X	X	2개	○○기관 등
	X	○	○	2개	○○기관 등
미도입 (62개)	-	-	-	-	-

5. 청렴옴부즈만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개선방안

-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등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공정성 제고장치 마련

【우수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청렴옴부즈만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우수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VI. 맺 음 말

-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사규 정비·개선
 - 수의계약 금액기준, 교차감사제도 등
- 조치기한 : '10년 10월말까지
 - 9월초 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송부 예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40점)
 - 가점 부여
- 반부패·윤리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 지속적 발굴 계획
 - ※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 등

I

추진 배경

-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넘어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경영 필요**
-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는 사규 정비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윤리·투명경영의 기반 마련
 - 공직유관단체 사규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가 원칙이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질적 개선실적이 저조**
 - ※ '09년 시책평가결과 대부분 기관의 개선과제 발굴이 부진(원안동의가 11건 이상인 기관이 전체 23개 중 20개)하고, '10년 성과도 미흡
 -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80개) 또한 자율적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고, 일부 기관은 위원회 직접 평가 요청
 - ※ LH, 신용보증기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따라서 주요 부패취약 분야 관련 사규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후 개선과제를 마련·전파할 필요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102개)의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인사, 기관운영비 사용, 계약, 감사 관련 규정을 직접 검토하여 부패취약분야의 개선과제를 발굴·권고
 - 우수기관의 개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후발 기관이 타기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자발적으로 사규에 직접 반영·시행토록 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윤리·투명경영 수준 제고

1. 수의계약 체결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지속적 특혜시비 발생
 - ※ ○○공사는 '07년 매각계약 381건 중 214건(56%), '08년은 112건이 수의계약 체결. 특히 박모 씨는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고철을 독점으로 사들여 특혜 논란이 있다고 지적('08.10월, 국정감사)
 - ※ ○○공사는 '07년 185개 수납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중 10곳만 경쟁입찰을 거치고 대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을 앞둔 내부 인사에게 운영권 양도('08.3월, 감사원)
- 대부분의 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법령보다 강화된 금액 기준 적용
 -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용역의 경우는 5천만원, 공사의 경우는 2억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는 기관은 77개
 -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물품구매·용역은 3백만원, 공사는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25개 기관은 법령보다 엄격한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

<수익계약 금액 규정 현황>

구 분	대상금액(이하)	기관수	기 관 명
물품구매 용역	3백만원	1개	한국지역난방공사
	5백만원	2개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1천만원	3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천만원	3개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3천만원	16개	기술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5천만원	77개	* 국가계약법 기준
공 사	5백만원	2개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1천만원	2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천만원	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등
	3천만원	1개	한국수력원자력
	5천만원	3개	대한지적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7천만원	1개	한국인터넷진흥원
	8천만원	4개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1억원	16개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2억원	70개	* 국가계약법 기준

- 91개 기관은 국가계약법상 1인 견적입찰 가능 금액(2천만원 이하)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3백만원으로 정하는 등 11개 기관은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1인 견적입찰 가능 금액 규정 현황>

대상금액(이하)	기 관 수	기 관 명
1인견적 불가	1개	한국전력공사
3백만원	3개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백만원	1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천만원	6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천만원	91개	* 국가계약법 기준

□ 개선방안

①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금액 기준 강화

- 국가계약법상 현재 물품·용역 5천만원(공사 2억)과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가능금액 기준을 강화

※ 102개 기관 중 25개(25%) 기관이 국가계약법보다 강화된 금액기준 적용

【예시 1】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물품·용역 3백만원, 공사 1천만원 이하로 규정

제13조(수의계약집행)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호 각호에 의한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공사(간이공사 포함)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2. 용역, 구매 :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예시 2】 한국감정원 「회계규정」

- 1인 견적입찰 금액을 3백만원 이하로 규정

제141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월이내에 동일품목을 동일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2. 연간계약에 의거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3.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소모성 물품을 소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②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부패통제장치 마련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철도공사 등은 자의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제하기 위해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예시】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필요성 재검토

제11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계약관련 정보공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 경북지역 지방공기업 A사장은 '09년 8월 해당 공기업 소유 골프장의 홀인원 이벤트 사업 운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사업자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 수수('10.4월, 감사원)

※ ○○공사 A직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입찰서류를 조작·제출한 친척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3억원 가량의 공사를 무자격업체와 계약('08.5월, 감사원)

○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관련 부패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

※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편법 하도급,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건설 부조리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불법행위는 '07년 26건, '08년 131건에서 '09년 현재 268건으로 대폭 증가('09년 국정감사)

▪ 특히 '09년에 적발된 불법 내용은 불법 재하도급 시행 등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도급대금 지급기한 초과, 불법어음 지급, 하도급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등 자금 문제가 원인('09년 국정감사)

※ ○○공사 직원 3명은 '05년 5월 공사 하도급 청탁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고, '07년과 '08년에는 골재 납품계약과 관련해 총 6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09.7월, 경북경찰청)

-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하도급 현황 등 세부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미공개

□ 개선방안

③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 경기도는 '09년 10월부터 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예시】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

-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사항 등 계약 세부정보를 홈페이지 공개

제23조(공사계약관리) ①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차량·시설·전기공사의 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계약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관련공사의 사업부서 담당자는 이외에도 공정율(매월말 기준), 하도급사항, 현장배치기술자, 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공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청렴계약제 도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청렴계약제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징구 등으로 운영

- 우리 위원회는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규정 법령화 등을 권고('09.12월)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각각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명문화를 추진중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단위 청렴계약제 도입을 추진중

<청렴계약제 도입 및 적용대상 금액 현황>

구 분	대상금액(이상)	기관수	기 관 명
도입 (66개)	모든 계약	11개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백만원	1개	한국마사회
	3백만원	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5백만원	2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천만원	1개	한국우편물류지원단
	2천만원	1개	한국방송광고공사
	3천만원	1개	한국석유공사
	5천만원	1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 규정	47개	○○공사 등
미도입 (36개)	-	-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 업자로 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필요

- 특히 제재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재기간 경감을 불허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

※ 현재 한국전력만 제재기간 경감 불허를 규정

□ 개선방안

④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 모든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붙임2> 농수산물유통공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참조

⑤ 청렴계약 위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의 경감 불허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경감 불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 허용

【예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제4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계약시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Ⅲ

인사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내부직원만으로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배제하여 승진, 특별채용 등 인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저하
 - ※ '07년 12월 신규직원 채용 관련 점수를 조작한 ○○기관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전 국회의원 장모씨도 ○○공사 간부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08.11월, 검찰청)
 - ※ ○○공사 전 사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 명목으로 41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공단 전 이사장은 직원승진 대가 및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08.11월, 검찰청)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102개) 중 76개 기관이 내부직원만으로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현황>

구 분	참여규정 있는 기관	참여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26개(25%)	76개(75%)

- 외부위원 참여를 규정한 경우에도 위원의 자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임여부가 기관장 재량사항인 기관도 다수(○○공사 등 20개 기관)

-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한 인사위원의 참여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37개에 달함

<인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업무 배제규정 현황>

구 분	이해관계업무 배제규정 있는 기관	이해관계업무 배제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65개(64%)	37개(36%)

□ 개선방안

- ①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연임제한 규정 마련

【예시】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명시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상임이사,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특별채용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예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 인사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 배제

제3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2.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수사를 받는 도중에 의원면직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 발생

※ ○○공단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직원에게 의원면직을 승인함으로써 사기업체에 재취업 가능('10.3월, 감사원)

○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102개 기관 중 37개(36%)에 불과

<비위조사 임직원 의원면직 제한규정 현황>

구 분	제한규정 있는 기관	제한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37(36%)	65(64%)

□ 개선방안

③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불허

【예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

-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제5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관리요령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3.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비위 공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경하는 등 **숨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불신 초래

※ ○○기관은 고객이 분실한 300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주워 환급금을 수령 (형법상 횡령죄)한 직원을 감사에게 미보고(‘10.3월, 감사원)

※ ○○공사 사장은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봉급 4분의 1 감액’으로 의결된 직원을 ‘견책’으로 감경(‘10.3월, 감사원)

○ 부패행위자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관은 48개에 불과

- 이중 7개 기관은 징계감경 제외를 재량으로 하거나 단서규정을 통해 사회통념상 거절이 곤란한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감경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 미흡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외 규정 현황>

구 분	규정이 있는 기관			규정이 없는 기관
	의무	재량	단서	
기관수	41개	1개	6개	54개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없는 기관도 25개에 달함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운영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정
기관수	77개(75%)	25개(25%)

- 공금횡령 직원을 고발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행태 만연
 - 38개(37%)에 달하는 기관이 자체 공금횡령범죄 형사 고발기준 미비

<공금횡령범죄 형사 고발기준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정
기관수	64개(63%)	38개(37%)

※ 행정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3천만원 이상 고액 횡령자 113건 중 35.4%(40건)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처리 (권익위 부패방지시스템)

- ○○기관은 '08년 직무와 관련하여 2억 7,1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하고 고발하지 않음

□ 개선방안

- ④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예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자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제58조의3(징계양정의 기준)

-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 양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 ⑤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예시 1】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책 ~ 정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봉 ~ 정직	해 임	파 면	

【예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비위 유형	수수 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우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우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⑥ 공금횡령범죄 형사고발을 위한 자체 세부기준 마련

【예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금횡령범죄 고발지침」(붙임1 전문 참조)

제5조(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1. 감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와 학연, 지역연고,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감사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

※ 다단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고위직이 다단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채워져 감시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지적('09년 국정감사)

- 감사담당자의 이해관계 업무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102개 기관 중 34개 기관에 불과하고, 68개 기관은 미규정

<감사담당자 이해관계업무 배제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34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8개

- 자체감사가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 청렴도 측정결과 공직자는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7.95점)과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의 적절성(7.76점)을 종합청렴도(8.5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09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 감사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감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기관은 12개에 불과

<감사업무에 외부인사 활용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정
기관수	12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u>90개</u>

□ 개선방안

- ① 감사수행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

※ 배제사유(예시)

- 감사담당자가 감사수행일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감사담당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감사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감사담당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가 감사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 감사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업무에서 감사담당자 배제

제6조(독립성) ① 감사와 감사실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명예감사관제, 감사참관인제 등을 통해 감사담당자가 아닌 학계·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감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사과정을 참관

※ 명예감사관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등 4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으로 제도화(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

※ 감사참관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제10조)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운영중

【예시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기준 시행세칙」

-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감사업무 수행시 외부전문가 활용

제31조(외부 전문가 활용) 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품질향상과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계획 수립, 감사판단기준의 설정, 감사중점사항 발굴, 감사실시 방법 및 감사결과 처리방향 등에 관하여 감사실 이외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감사품질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예시 2】 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0.6월, 권익위)

- 명예감사관제 및 감사참관인제 운영의 근거규정 마련

제16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명예감사관 또는 감사참관인을 감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명예감사관 또는 감사참관인의 위촉 등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차감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간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연고·온정주의가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 내부감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교차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규에 반영 필요

- 특히, 국세청은 교차 세무감사를 통해 6개 세무서에서 78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9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으며, 교차세무 감사시 평균 추징세액은 131억원으로 자체감사 86억원에 비해 52% 증가('10.4월 국세청)

【예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 자체감사 기관관 교차감사 실시 근거규정 명시

제3조(감사의 구분)

- ③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40기관이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62개

※ 청렴옴부즈만 :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

- 계약과정 등을 감시하는 청렴옴부즈만은 공정한 활동이 필수적이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연임제한규정이 없는 기관도 존재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현황>

구분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제한	제척·기피 등	기관수	기 관 명
도입 (40개)	○	○	○	26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	×	5개	○○기관 등
	○	×	○	5개	○○기관 등
	○	×	×	2개	○○기관 등
	×	○	○	2개	○○기관 등
미도입 (62개)	-	-	-	-	-

□ 개선방안

④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자격 요건 구체화

-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기관운영의 감시 및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청렴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6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등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공정성 제고 장치 마련**

【예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연임제한 및 직무활동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규정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유흥업소 사용사례 지속적 발생
 - ※ ○○공단은 '09년 3월 립살롱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술을 접대한 후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카드 전표를 위조하고 정당 보좌진들과 식사를 했으며 집행 내역도 거짓으로 작성('09년 국정감사)
 - ※ ○○기관이 '07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0건에 총 1,148만원인데, 주점사용이 29건, 각테일바 3건, 단란주점 1건, 노래방 1건, 주말 식비 지출이 19건임('08년 국정감사)
 - ※ ○○○의원은 "○○기관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하는 등 불·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09년 국정감사)
- 대부분의 기관이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용시 실명 서명을 의무화하지 않은 기관이 32개에 달함
 - 노래방을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거나 이사장에게는 클린카드가 아닌 일반카드 사용을 허용한 기관(○○공단)도 존재

<클린카드 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업 종 제 한			실 명 서 명	
	가계부 지참 반영	노래방 제외	업종 미명시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84개	2개	16개	70개	32개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사용제한 업소, 위장가맹점 이용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71개이고, 31개 기관은 미규정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71개	31개

-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71개 기관중에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은 22곳에 불과하고, 49개 기관은 환수나 사용제한에 그침

<71개 기관의 제재조치 운영 세부현황>

구 분	징 계	사용제한	배상·환수 등
기관수	22개 (근로복지공단 등)	2개	47개

□ 개선방안

- ① 노래방, 실·내외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포함)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모두 반영

※ '07.10월 국가청렴위원회는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을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권고하였으며, '10년 공기업 예산집행지침(기재부)에도 반영

【예시】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등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재단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운용하며, 재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에 의하여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③ 재단은 전항의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제한업종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④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재단의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경위를 소명한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하여 결제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전표에 소속 및 실명 기재 의무화

【예시】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 실명 기재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⑤ 법인카드 전표에 서명할 때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③ 사용제한 업소, 위장가맹점 이용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제재조치 강화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예시】 근로복지공단 「법인신용카드 관리지침」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적용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2.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빈발

※ ○○기관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섭외성 경비를 법적 한도의 10배를 초과해 집행했고, 임원들은 지난 2년간 8억 4,800만원을 유흥비나 상품권, 보석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08.4월, 감사원)

※ ○○공사 B처장은 '06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대 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그 대금 782만 6000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08.8월, 감사원)

○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역이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라고만 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객관적 통제 장치 미흡

※ ○○공사 A사장은 술값 등 사적으로 사용한 617만 6000원을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골프비용 총 240만 6620원을 업무추진비로 전가('08.8월, 감사원)

※ ○○기관 B직원은 처장과 팀장의 동의를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첨부,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1700여만원의 비공식 자금을 마련('08.8월, 감사원)

- 심야, 휴일, 자택근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한 기관은 44개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객관적 증빙제출(출장명령서, 사전결재 등)을 의무화한 기관은 28개에 불과

<심야·휴일·자택 근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및 객관적 증빙제출 규정 현황>

구 분	사용제한 규정(44개)		사용제한 미규정
	증빙제출의무 ○	증빙제출의무 x	
기관수	28개	16개	58개

<4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세부현황>

구 분			기관수	기 관 명
휴일	심야	자택 근처	합계(44개)	
제한	제한	제한	39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제한	-	-	3개	○○공사 등
제한	제한	-	1개	○○기관
-	제한	-	1개	○○기관

- 상품권이나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자의적인 사적 사용 초래

※ ○○공사 등 3개 공기업이 '06년부터 '07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7억 1,800여만원으로 이중 경조사비 5600만원, 선물 5800만원, 축하 화분·화환 27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08. 8월, 부산시)

- ○○공사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23%인 7000여만원을 485회에 걸쳐 집행하면서 '집행용도 세부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08. 8월, 부산시)

※ ○○공사 전 감사는 '05년부터 147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고향 지역 주민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고 휴가비로 활용하는 등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259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08.8월, 감사원)

- 대부분의 기관이 상품권 또는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권과 화환 모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7개에 불과

<상품권 및 화환 구매·배부 관리 현황>

구 분	기 관 명
상품권 및 화환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
상 품 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5개 기관
화 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6개 기관

○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미흡**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
- 67개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 없이 공개하는 기관도 상당수여서 지속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

구 분	홈페이지 공개		홈페이지 비공개
	사규에 따른 공개	사규 없이 공개	
기관수	48개	19개	3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기관(67개)의 공개 대상 및 주기>

대 상	주 기	기관수	기관명
기관장 임 원	월 별	2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기별	4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기관장	월 별	1개	한국디자인진흥원
	분기별	3개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반기별	1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1회	5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 64개 기관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별도 일상감사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12개에 불과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 금액 현황>

구 분	대상금액	기관수	기 관 명
규정(38개)	20만원	2개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0만원	1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0만원	9개	한국감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백만원	24개	
	2백만원	2개	
미규정(64개)	-	-	

□ 개선방안

④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예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용

1. 집행목적(사업추진, 업무협의 등)
2. 집행자명, 집행(예정)일, 집행장소
3. 집행사유(구체적인 회의·협의 내용)
4. **집행대상 : 집행대상의 회사(기관)명, 부서, 성명**
5. **집행내역 : 품목(석식·기념품 등), 참석인원, 총 지출액, 1인당 지출액 등**

※ 도로교통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22개 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기재 의무화

⑤ 심야 및 휴일 사용, 자택 근처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예시 1】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 심야, 휴일,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예시 2】 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추진비 집행요령」

- 휴일과 22시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지

제9조(사용시간) 업무추진비는 휴일과 22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심야·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 제출 의무화

【예시】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 심야 및 휴일 사용 등을 금지하고, 객관적 증명 제출한 경우만 지출 허용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바.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⑦ 상품권 및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상품권 및 화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입내역(일시, 수량, 구입처 등) 및 배부내역(배부수량, 수령인명)을 기록하고 관리

※ 한국감정원은 상품권 구입 금지

【예시】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 상품권의 구입 및 배부대장 작성·비치

1. 법인카드 사용방법

사. 회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시 관리대장(상품권 구입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별도로 정한다.

⑧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규정을 사규에 마련

※ 기관장 이외에 임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확대 추세(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예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 위원장, 사무국장,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 공개

II. 일반지침

2. 위원장, 사무국장, 부서장 기관업무추진비

- 직원 간담회, 유관기관·대민 등 대내·외적인 업무추진 경비
- 개인별 각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클린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월별 사용 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

⑨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금액 기준 강화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회부하여 실시하는 일상감사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고 대상금액 기준을 강화

※ 12개 기관이 100만원 미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감안,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금액 기준을 강화할 필요

【예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감사규칙」

- 매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에 대해 일상감사 실시

제24조(회부시기) ①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서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관련문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

1. 사업실행 기본계획중 예산집행 및 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전용,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
4. 매 건당 20만원을 초과한 예산의 지출원인 및 그 변경사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국내출장 및 부임여비
 - 나. 세금·공과금 및 공공요금
 - 다. 월정액 고정경비
 - 라. 급여
5. 매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지출사항

1. 협조요청 사항

- 공통사규 개선과제 이행(102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인사, 기관운영비 사용, 계약, 감사 규정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검토하여 발굴한 개선과제를 사규에 적극 반영
 - ※ ‘10년 하반기 시책평가지 개선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 (가점 또는 감점)
- 수의계약 기준 강화, 기관장외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전향적으로 개선

2. 향후 추진계획

- 공통사규 개선과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547개 기관에도 자율적 개선을 권고
- 위원회 운영, 교육훈련, 복지 규정 등 공통사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권고할 계획
- 향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관별로 공통 규정 개선사례 발굴·권고
 - 금융업무, 중소기업지원, 토지·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 등

<붙임 1> 공금횡령범죄 고발지침(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 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고발대상)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다.

제4조(고발주체·의무) 원장 또는 검사역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 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 다.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을 부인 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횡령혐 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검사역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유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 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 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36조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농수산물유통공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법인카드 이행점검 결과

I.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관행적 부조리 요인

- ◇ 클린카드 사용의무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 및 공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
- ◇ 그러나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빈발,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사례

가. 개요

- 점검목적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07.10월) 이행상황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카드사용 제한업종 지정, 사적사용 금지, 실명서명 등 엄격한 사용기준 마련
 - 사용내역 모니터링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부당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재 실효성 제고 등

나. 주요 점검 결과

-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미흡한 위법·부당한 집행
- 의무 제한업종 미반영 및 변칙적 이용
 - 노래방,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심야 유흥업소 이용, 운동용품 구매 등 사적사용 금지의무 위반

- 공식 행사를 명목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유흥주점(등록업종 : 일반주점, 서양음식 등), 노래방 등 유흥업소 이용

- 개인 물품 또는 선물(감독기관 등에 제공) 등 구매에 법인카드 사용

* 개인적으로 백화점에서 골프화, 골프의류, 골프가방 등 구입

* 양주, 와인 등을 구매, 감독기관 등에 제공

- 주무부처 또는 감독기관 로비를 위한 부당한 지출

* 심야시간 카페(주점)에서 감독기관 회식비용을 법인카드 결제 혐의

○ 실명서명의무 위반으로 카드사용의 책임성 저하 및 통제 무력화

- 법인카드 사용시 명확히 실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아예 서명이 없는 경우도 다수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 미작동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 점검에 그침

- 실질적 감시 기능이 없어 증빙 없는 지출을 허용, 사적사용
등 불법사용 통제 불가

* 대형할인점·마트 등에서 물품·상품권 등을 구매하였으나, 사용 내역이 없음
대부분의 지출 건이 카드전표 외 증빙 없는 지출

○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있는 경우에도
불법사용 혐의 통지 실적이 없음.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 미흡

- 위법·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및 위장 가맹점 등에 대한 통보, 고발 등 실적 전무

《협조 요청 사항》

-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등에 의한 철저적 통제장치 마련
- 불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증빙자료 없는 지출은 사적사용으로 간주한다는 내부 홍보
- 불법사용 유형·정도에 따른 자체 제재기준 마련
- 실명서명 의무 준수(실명서명 없는 전표는 회계서류로 불인정)
- 골프장, 노래방 등 의무적 제한업종 전면 반영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교육

우수사례 발표(내공사)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LH)

2010. 8.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내용

I. LH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배경

II. LH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III. LH 부패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



I. LH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1. 추진 근거

- ❖ 권익위 : ('05.12.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한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 ❖ 공직유관단체 : ('07.12.28)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운영

❖ LH :

[구]주공 ('07.10.31)	→	LH통합 후 사규, 지침 제정비 시행 ('09.11.26) •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정 • 모든 사규·지침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구]토공 ('08.01.10)		

<근거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9항

LH

I. LH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2. 도입 배경

- [대외적]
 - 정부(국민권익위)의 청렴정책에 부응하고 선제적·시스템적 부패방지제도 도입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대국민 공사이미지 제고
- [대내적]
 - 내부규정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제거·정비(투명성 확보, 반부패 업무수행의 효율적 추진)
 -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 사전 제거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LH

II. LH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적용 대상

- LH 공사 사규 및 지침
 - * 적용제외 : 고객, 국민생활 등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조직설치, 운영, 업무 분장 등 사장의 경영방침 관련 사항

2. 운영 목표

- 자율평가 정착
- 전 부서의 부패방지제도 참여율 제고
-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II. LH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3. 운영 방법

구분	운영형식	운영방법
자율평가 시스템 *부패영향평가업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감사실-164('09.10.21)]	제·개정 사규 평가(규정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규정 제·개정시 규정운영부서에서 자체평가 후 평가주관부서로 부패영향평가 의뢰(의무적 평가대상)
	제안평가 (부서,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 및 직원이 내부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사항을 발굴하여 평가주관부서로 부패영향평가 제안
	평가주관부서 자체평가 (법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운영부서 제·개정 시 평가의뢰사항 및 각 부서·직원 제안에 대해 법무단 평가 실시 • 법무단 자율적 과제발굴 및 평가 실시
대외평가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평가 필요시 권익위에 컨설팅 요청 * '10년 LH 부패영향평가 전담TF팀을 구성, 대국민 접촉관계 사규 26개 등에 대해 권익위와 합동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중



II. LH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4. 부패영향평가 절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영향평가 요청 접수 (사규부서, 직원 → 법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소관사규 제. 개정(안) 현행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직원 제안 현행사규에 대한 법무단 자체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규 및 기초자료검토 (법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사규 관련 자료 수집. 검토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변호사 자문 포함) 제안사유 등 청취(직원제안인 경우)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컨설팅)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보고서(안) 작성 및 사규소관부서 협의 (법무단 ⇔ 사규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지침)에 따른 평가 실시 법무단 평가결과서(안) 작성 사규 반영가능성 등 사규소관부서와 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통보 (법무단 → 사규별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사규 및 제. 개정사규(안) 평가결과통보 : 법무단 → 소관부서(원안동의, 개선권고 등) 제안평가 결과 통보(법무단 → 제안자, 소관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사규부서 사규개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사항의 사규반영여부 관리(내부평가 실적에 반영) 평가결과 반영 사규(안) 제출. 등록(사규소관부서 → 법무단)

LH

III. LH 부패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

연도별 실적

해당년도	평가내용	실적건수	대상규정
✓ '09년	원안동의	19	분양규정 시행세칙, 공사계약업무요령, 연구업무 규정 시행세칙, 임대규정시행세칙, 자재관리지침, 인사규정 등 19건
	개 선	46	분양규정 시행세칙(공공용지, 상업용지, 복리시설 등), 생활대책용지공급에 관한 지침,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관한 지침 등 46건
✓ '10년 상반기	원안동의	49	주택분양규정, 용지규정 시행세칙,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 설계변경 업무지침, 문화재 업무처리지침 등 49건
	개 선	8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심사 등에 관한 지침,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등 8건

LH

Ⅲ. LH 부패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

사 례 1

- ▶ 평가대상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 등에 관한 지침
-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 ▶ 현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의 뇌물수수 등 부패발생 가능성 존재
- ▶ 개선결과
 -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의 전자시스템화를 통하여 선정과정에서의 특혜발생 가능성 배제, 투명성 확보에 기여



Ⅲ. LH 부패영향평가 실적

사 례 2

- ▶ 평가대상
 -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 ▶ 평가항목
 - 접근성, 공개성
- ▶ 현황 및 문제점
 - LH 건축,토목분야별 운영의 이원화, 주관적 평가기준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 미비로 건설업계의 불만 존재
- ▶ 개선결과
 - 심사위원 실명공개, 평가과정 CCTV 공개 등 평가과정의 접근성 및 공개성을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화 및 공정성 확보 기반을 마련



Ⅲ. LH 부패영향평가 실적

▶ 보도자료

[헤럴드경제]

LH,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 마련했다

입력시간 : 2010-05-26 09:10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LH는 건축·토목분야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주관적 평가기준을 객관화함으로써 그동안 최저가제에서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진다면 심사의 공정성에 우려감을 표명하던 건설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저가로 투찰한 공중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합 전 토지공사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실적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되어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소식에 대해 건설업계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실적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주는 조직"라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LH는 지난 25일 오전 본사 대강당에서 국내 250여 건축·토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새로운 기준은 대전도안 7BL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

장주남 기자/namkang@herald.com

건설경제

2010년 05월 27일 목요일 001면

LH, 최저가낙찰 주관적 심사 폐지

공정성 확보 위해 평가기준 객관화... 최저가 입찰방법 개혁 신호탄

LH가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의 주관적 심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는 시공사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의 자율의 입찰제도 도입과 지난 2006년 도입된 원형 최저가낙찰제 입찰방법 혁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객기자회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 본사의 청취실을 열어 LH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 측은 이번 주백공사와 본지 공사에서 차등 간담회와 토목 공사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기존 단일화한 것이다. 입찰기준 단일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저가낙찰제의 주관적 심사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공짜나 저가세, 공짜의 시공을 제공하는 건설사와 무상공사 비용을 위해 건설사가 입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공짜비문학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도 심사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찰서류나 조달청의 입찰제도를 개정해 심사위원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왔는데 일부의 발주자만 자율성 제고 방침과 맞물려서 LH가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과 심사방식은 지난 2009년 입찰 공고내 데킨도안 7B와 동 신규 입찰 지구부터 적용된다.

관객기자회견

마니투데이

2010년 05월 27일 목요일 019면

LH, 최저가 낙찰제 심사 공정성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된 최저가낙찰 공사의 저가심사 때 제출서류는 줄여달라는 입찰업체의 열망에 따라 평가기준을 객관화한다. 또 단점있는 발주자를 위해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최저가공제 공사 저가심사 시에 입찰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양을 줄여달라는 입찰업체의 열망에 따라 평가기준을 객관화한다. 또 단점있는 발주자를 위해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최저가공제 공사 저가심사 시에 입찰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양을 줄여달라는 입찰업체의 열망에 따라 평가기준을 객관화한다. 또 단점있는 발주자를 위해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객기자회견



Ⅲ. LH 부패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

▶ 사진자료(대강당에서 용역 심사과정 CCTV중계 장면)



지식의 저주와 변화관리

지식의 저주와 변화관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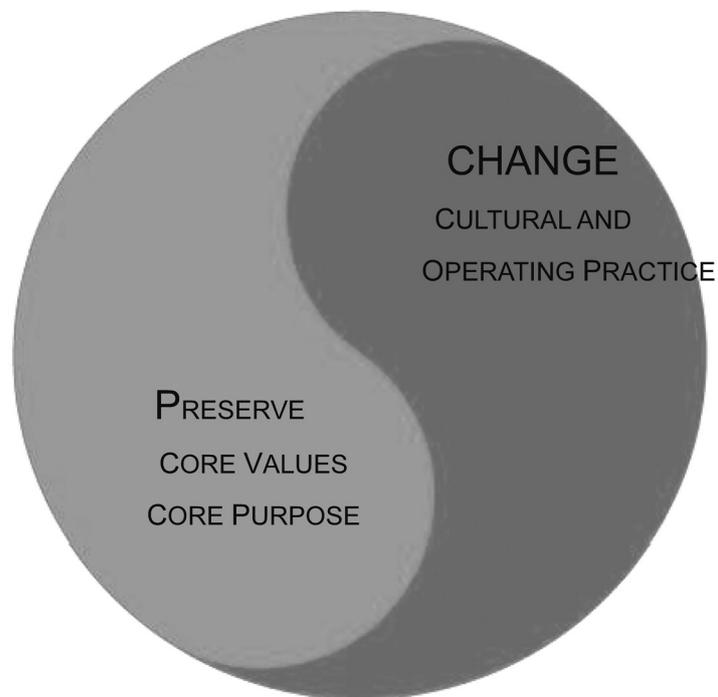
이 호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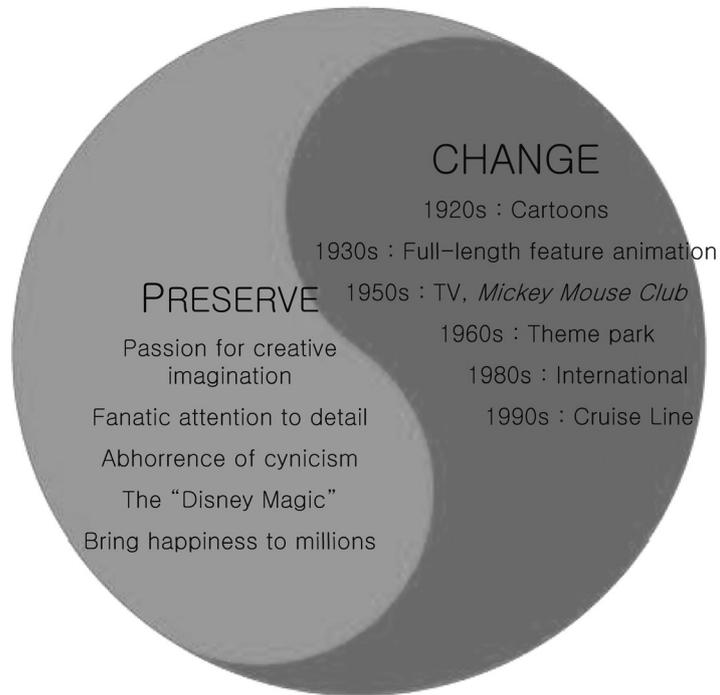
Copyright by Ho-uk Lee. Do not copy or cite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윤리 및 청렴 정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1) 핵심 메시지를 찾아라

- Be simple!
- Simple는 “바보만 알아 듣는 단순한 구호 (dumbing down)” 또는 “공허한 구호 (sound bites)”가 아니다.
- Simple= Core + Compact





SW 항공사의 핵심가치는?

- 핵심 메시지는...



2) 예상을 뒤엎어라

-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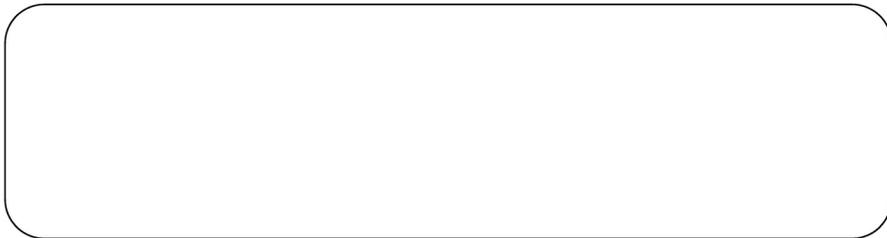
상식→비상식

- 스위스는 300년 동안 시계산업 장악.
 - 1970년대에 스위스 시계산업 초토화 위기.
- Q. 1970년대 스위스 시계산업 위기의 원인은?

- 스와치는 어떻게 상식→비상식으로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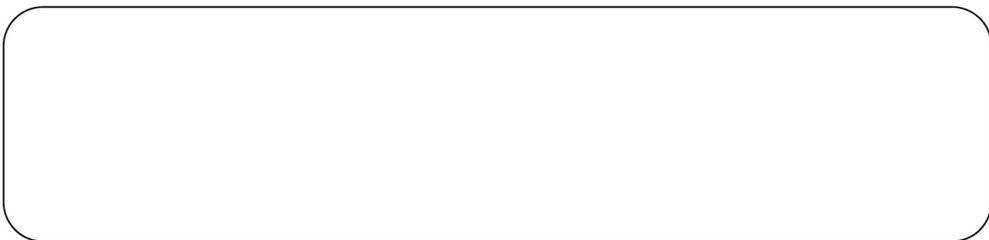
- 상식→비상식을 통해 예상을 뒤엎으면...



3) 구체적으로 해라

-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 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기억한다.
- 직접 경험을 하게 해라
 - 예) 갈색 눈과 파란색 눈

- 구체적으로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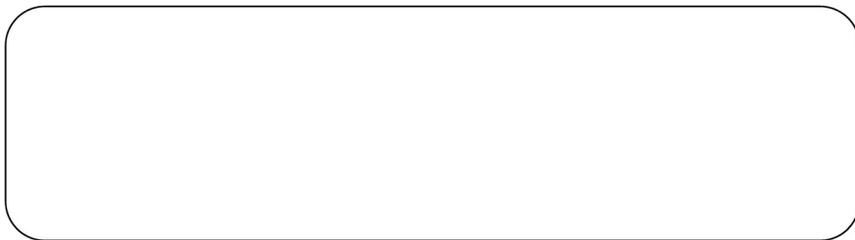
4) 신뢰를 줘야 한다

신뢰를 제공 할 수 있는 source를 찾기

- 외부 전문가 호소 (External credibility)
- 내부 자료 및 통계 (Internal credibility)
-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호소 (Audiences credibility)

예) Barry Marshal는 누군인가?

- 신뢰를 주면...



5) 공감을 형성 해라

Make people care! How?

A) 그룹이 아닌 개개인에 호소.

B) Self-interest에 호소

- 공감을 형성 하면...

윤리 및 청렴의 정책을 실행하려면:

1. 이해하고 기억 해야 한다	핵심 메시지 찾기 구체적으로 해라
2. 주의와 관심 갖게 해야 함	예상을 뒤엎어라
3. 믿고 동참해야 한다	신뢰를 줘라
4. 가슴으로 열정을 갖고 해야 함	공감을 형성 해라

성공 요건

- 1) 핵심 메시지가 있는가?
- 2) 예상을 뒤엎는가?
- 3) 구체적인가?
- 4) 신뢰를 주는가?
- 5)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관리 능력 구축
(Hungry for and Ability to Change)**

변화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 1 단계: 긴박감 조성

- 개혁이 가능 하려면 경영층의 75 % 이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개혁은 추진하는 기업의 50% 정도가 이 단계부터 실패한다.
- 직원들은 현실 안주, 개혁에 무관심, 과거 성공에 대한 자만,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조직의 리더들은 긴박감을 조성하여 구성원들의 개혁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 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인식 시켜야 한다.

Only the Paranoid Survive!

제 2단계: 강력한 변화 추진 구심체 구축

- 최고경영자가 반드시 포함된 변화 추진 구심체를 구축해야 한다. 일개 부서의 임원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가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 회장, 사장, 사업본부장 등 초기 1년 동안은 3명에서 5명으로 도 가능하나, 대기업의 경우는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직전까지 20~50명 규모로 커져야 한다.
- 개혁이 성공하려면 추진 구심체는 그 구성원들이 여러 면 (영향력, 신뢰 등) 에서 능력을 가져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 개혁이 성공하려면 추진 구심체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단결을 해야 한다. 즉 추진 구심체 “group”이 아닌 “team”이 되어야 한다.

제 3 단계: 비전 창조

- 개혁에 성공한 기업들은 개혁의 방향을 제시 해 주는 비전을 창출한다.
- 반면에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예산과 계획만 있다.
- 좋은 비전은 추진 구심체 구성원간의 단결은 물론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한다 (Strategic Intent).
- 개혁에 도움을 주는 비전의 특징
 - 비교적 의사 전달이 쉽고 5분 이내에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고객, 주주,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 사람들의 이해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제 4 단계: 비전 확산

- 개혁은 모든 구성원들이 희생을 각오 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희생은 비전이 구성원들에게 확산 되어야 가능하다.
- 모든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비전을 확산한다.
 - 사보: 비전에 대한 생생한 기사를 1면 기사로.
 - 경영자 회의: 개혁에 관한 토론장으로.
 - 교육훈련 프로그램: 일상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개혁, 새로운 비전, 사업상의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대체.
- 행동으로 말하기 (술선수범)
 - 행동은 말보다 더 중요한 비전 확산 수단이다.
 - 개혁을 주창하는 핵심 인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여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

제 5 단계: 비전의 장애물 제거

- 비전이 구성원들에게 확산이 되고 구성원들이 개혁에 동참하고 싶어도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
- 구성원들이 새로운 비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 직무 영역과 역할이 문제라면 조직구조를 바꾸자.
- 구성원의 사고나 가치 체계 상의 문제이면 설득을 해야 한다.
- 임파워먼트란 구성원들이 개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 해 주는 것이다.

제 6 단계: 단기적인 성과 창출

- 개혁이 단기적인 성과 향상을 유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대열에서 이탈한다.
- 개혁에 의해 단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성과 지표(예, 품질, 고객만족, 생산성, 시장점유율, 신제품 출시 등)를 채택하여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단기적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
- 단기적 성과 목표 달성은 구성원들에게 개혁을 제대로 실천하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조직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

제 7 단계: 개혁을 너무 일찍 중단하지 말라

- 단기 목표 달성에 만족하여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려서는 안 된다.
- 개혁이 기업문화 속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5~10년이 걸린다. 단기간에 승리를 선언하면 개혁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단기 목표를 달성하면 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향상된 신뢰를 이용하여 더욱 방대한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예를 들어, 개혁의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시스템과 구조를 찾아내어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정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 8 단계: 개혁의 제도화

- 개혁이 기업 문화 (사내 규범이나 공유가치)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개혁이 기업 문화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 첫째, 구성원들에게 변화가 기업의 성과 개선에 어떻게 기여 했는지 자세히 이해 시켜준다.
 - 둘째, 개혁이 구성원 한 두 사람에게만 의존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신임 최고경영자로 임명되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따라서 승진과 후계자 결정시에 개혁에 대한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경영 후계자를 결정하는 이사회 참여자들에게 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사과의 틀 바꾸기



Clock Building

VS.



Time Telling

Have your managers made the shift in perspective from Time Telling To Clock Building?

